

1. 개정이유

복지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및 별지 제1호의10서식 개정)

- 영 제15조에 따른 이·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 서류 정정·변경 방법 규정

나. 등·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 등·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다.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및 제15호의3서식 신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서식 신설

라.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기록사항을 정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 단서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뒤쪽 제1호 중 “신청하거나 해제”를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2제3항,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입(재등록 포함)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주민등록(신규등록)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출력일	
세대주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남/여)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입자 또는 주민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남/여)	거주 여부 확인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거주	[]비거주
확인자 의견란					

(이장·통장 확인경위 및 의견진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전입·주민등록 신고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원)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이장·통장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이·통장 사후확인 사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정 동의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장·통장의 정확한 사후확인이 허위 전입신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에 대해 신고인이 총수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사후확인 시 동 번호 및 호수를 확인하여 확인자 의견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대상자 (총 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 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일시	처리 기간
		14일

해제 신청인	[] 제한신청자 본인 [] 세대원, 직계존비속 [] 제한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 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해제 대상자	성명	제한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한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한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제한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해제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해제신청인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해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자의 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등 제한 신청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 직계존비속 및 제한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말소자 초본 포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로, 해제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한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은 해제 신청인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신청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그 제한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한 해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한신청자와의 관계’ 칸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해제 대상자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일	제한 해제 신청 사유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 도)	(시 · 군 · 구)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의 제한 해제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동의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한신청자의 사망 후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신청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한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제한대상자의 제한 해제 신청은 반려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	전입세대 확인서 교부 []
개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법인·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1.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2.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여부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사항	확인 서류 1 []	확인 서류 2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유의 사항

1.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3. 법인·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4.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Application for information on a household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opy

※ Please read the guidance notes on the back of this form before you fill it out

(Front)

Application Number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ly
--------------------	------	-----------------	-------------

Application Details	Request []	Copy Issuance []
---------------------	-------------	-------------------

Applicant (Individua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District) (City) (Province)	Contact Number

Applicant (Corporate)	Name of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Representative	Contact No. (Business)
	Address	
	Name of Visitor	Resident Registration No.

Location of the Building/Property Being Requested

Whether the name of the person registered for cancellation or non-residential name and the date of move-in are indicated	Showed ☐ / Not shown ☐
--	--

Purpose

I, the undersigned,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Confirma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2)(1)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49(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14 (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 as above.

Day Month Year

Name/Name of Company

(Seal or Signature)

To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 The Power of Attorney is only completed if you are applying by proxy.

Power of Attorney

I authorize the above-named applicant to be issued with a “Confirma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2)(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년 월 일

Delegator (Individual)	Name (Seal or Signatur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District) (City) (Province)	Contact No.
Delegator (Corporate)	Name of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Representative (Seal or Signature)	Contact No.
	Address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Applicant's Identification Card In case of Corporate applicants, proof of identity of the Representative or Corporate Seal or User Seal must be submitted.	Fee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ial in charge	1.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proving that the applicant is eligible for the application of "Confirma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2. Whether the applicant is exempt from fees for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 of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View: 300 KRW per view - Copy: 400 KRW per issuance 500 KRW in case of Article 29(2)(2)(3)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Consent to Shar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by the official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including the use of computerized processing information organizations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6)(2)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f the applicant does not consent to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or the documents are not verifiable through the joint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documents themselves.

Matters to be checked	Document 1	[]	Document 2	[]	Applicant	(Seal or Signature)
-----------------------	------------	---------	------------	---------	-----------	---------------------

Notes

1. The 'Signature or seal' field must be signed or stamped, and fingerprints cannot be used. In this case, the signature must be a handwritten Korean full name.
2. Foreigners and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re required to present their alien registration card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car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2)(1)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9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ei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an be replaced with their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3. For Corporate applicants, the 'Representative' field must be signed by a representative or stamped with the corporate seal.
4. If the same applicant applies for view or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ccupancy for the location of multiple buildings or facilities for the same purpose based on the same documents, the applicant may apply in bulk in accordance with Appendix Forms 15 and 16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n that case, you must put the toe edge of the folded paper meeting the next page (Appendix Form 15) in half and stamp your personal seal in the center where the edge of the folded paper meets the next page (Appendix Form 16).
5. Only the owner, tenant, leaseholder, lessee, or sales contractor of the relevant building/property can delegate an application to view or issue a "Confirma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In this case, the person applying on behalf of the delegate must submit a power of attorney and proof of identity of the person and the delegate (In the case of Corporate applicants, proof of the identity of the Representative, Corporate Seal or User Seal).
6. Anyone who falsely completes an application or power of attorney, such as forging or fraudulently using another person's signature or seal, will be punished under the Criminal Act.
7. If the address of the building/property you wish to verify is incorrect, the relevant household cannot be confirmed through the "Confirma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8. Foreigners and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cannot be the head of household or a cohabitant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so it is not possible to verify whether they are the head of household or a cohabitant through "Confirmation of Household Registration."
9. Those who are eligible for fee exemption for information on a household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op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e as follows:
 - a. Wher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pplies for it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 of Article 29(2)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b. Where a recipient under Article 2(2)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pplies for it;
 - c.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etropolitan City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City/Country/District/Town/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such as in the event of disasters;
 - d. Where fee exemption for provid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is prescribed in any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 e. Where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national independence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pplies for it;
 - f. Where a person who has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for it;
 - g. Where a patient suffering from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registered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Assistance to Patients Suffering from Actual or Potential Aftereffects of Defoliants, Etc.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 h. Where a war veteran registered under Article 5 of the Act of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Associations applies for it;
 - i. Where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and determined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pplies for it;
 - j. Where a person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or his/her bereaved family (a person with first priority only. If the person granted priority is the father or mother, the mother or father not granted priority shall be included.) register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applies for it;
 - k. Where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under Article 5 or Article 5-2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pplies for it;
 - l. Where fee exemption is prescribed by ordinance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and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② (생략) <u><신 설></u>	제4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 관련 서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기록사항을 정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및 해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7조의2제2항 각 호 단서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

5서식에 따른다.